

부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5가단244575 구상금등 청구의 소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피 고 1. A

2. B

3. C

변 론 종 결 2016. 6. 28.

판 결 선 고 2016. 8. 9.

주 문

1. 피고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,580,607원 및 그 중 177,579,697원에 대하여 2015. 11. 20.부터 2016. 3. 29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8.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33,715,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33,715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,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피고 C 사

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8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36,215,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36,215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

이 유

1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기초사실

1)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그 내용

: 별지 기재와 같다.

2) 대위변제 및 잔존 채권액

: 별지 기재와 같다.

3)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등

가)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2015. 9. 11. 주유소를 폐업하여 위

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. 9. 1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2015. 8. 2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나)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(2015. 3. 30.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. 이하 '제이티캐피탈'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원고에 대하여는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.

다) 한편 피고 B은 2013. 10. 2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이티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쳐 주었는데,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주유소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행위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

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.

2)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위 피고는,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 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점을 위 피고가 알지 못하였으니 위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가)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).

나)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이티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2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행위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매매행위는

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 C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다) 나아가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제이티캐피탈,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2015. 9. 18.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7,500,000 원이고,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제이티캐피탈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83,784,7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, 그 취소될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17,500,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제이티캐피탈에 대한 실제 채무액 83,784,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,715,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33,715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20,00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갑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A,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

정우영

청 구 원 인

1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원고는 소외 D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 A,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카드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. 4. 24. 원고와 보증금액 금 180,000,000원, 보증기한 위 같은날부터 2016. 4. 22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, 위 피고들은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(갑제1호증의 1 신용보증서, 갑제1호증의 2 신용보증약정서 참조).

2. 원고의 대위변제

가. 그런데, 위 대출 이후인 2015. 9. 11.에 위 피고들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, 원고는 2015. 11. 20.에 금 180,350,027원을 소외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습니다(갑제2호증의 1, 2 사업자등록증 및 휴·폐업조회, 갑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참고).

나.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위 피고 간의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

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만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, 그 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. 11. 20.이후 연 12%입니다.

3. 일부상환

원고는 위 대위변제 당일 금 2,770,33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177,579,697원이 되었으나, 대위변제일로부터 일부 상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.

[2,770,330원 × 1월(2015. 11. 20.~2015. 11. 20.) × 12% = 910원]

4. 구상채권합계액

그러므로 피고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7,580,607원(대위변제금 잔액 금 177,579,697원 + 확정손해금 910원) 및 이 중 금 177,579,697원에 대하여 2015. 11. 20.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부동산 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상남도 김해시 아파트 제6동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 제20층 제2001호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59.9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상남도 김해시 대 59984㎡

대지권의 표시

1 소유권대지권 5998400분의 2117

- 이상 피고 소유 -